	공개정보 및 스킴 마크 관리 규정	문서번호	KPCQA-EQP-PA09
		제정일자	2024.06.24.
		개정번호	1

제·개정이력현황

No	제·개정일자	제·개정내용	비고
0	2023.07.11.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경영시스템 도입	시행일(2023.07.11.)
1	2024.06.24.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 운영요령, 세부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 반영	시행일(2024.06.24.)
2			
3			
4			
5			
6			
7			
8			
9			
10			

구분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성	글로벌사업센터	팀 원	서승연	서승연
검토	DX인증센터	팀 원	이예지	
승인	기후변화인증센터	팀 원	김정운	김정운

목 차

1. 목적 ····· 3
2. 적용범위 ····· 3
3. 인용문서 ····· 3
4. 용어 및 정의 ····· 4
5. 일반사항 ····· 5
6. 공개정보의 제공 및 관리 ····· 6
7.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의 등록 및 유지 등 관리 ····· 7
8.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에 대한 사용 규칙 ····· 8
9.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의 오용에 대한 조치 ····· 8

1. 목적

이 규정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에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개되는 정보, 환경정보 주장에 사용되는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의 사용 절차 및 규칙, 성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에 정의된 공개정보의 제공방법 및 세부관리 절차,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또는 검증 활동의 결과에 사용되는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의 사용 절차, 규칙, 오용 시 제재 절차, 성명서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정 검증 프로그램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정보와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에 대해서는 각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업무 지침(KPCQA-EQG-FP)에 따른다.

3. 인용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발행연도가 표기된 경우 인용된 버전만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3.1「상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2「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3「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3.4 「KOLAS 인정스킴 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KOLAS-R-006)

3.5 KS Q ISO/IEC 17029:2019 적합성평가 -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기관에 대한 일반 원칙과 요구사항

3.6 ISO 14065:2020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for bodies validating and verify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3.7 KS A ISO/IEC 17030:2003 – 제3자 적합성스킴 마크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4. 용어 및 정의

4.1 '공개정보'란 인증원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또는 그와 연관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는 인증원의 타당성평가/검증 활동과 관련된 정보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의 프로세스와 연관된 정보를 포함한다.

4.2 'KOLAS 인정스킴 마크'란 KOLAS 공인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심벌을 말하며, 이 스킴 마크에는 KOLAS 로고에 KOLAS 공인기관의 인정스킴과 인정번호가 함께 표시된다. 이는 KOLAS에서 허가에 따라 KOLAS 공인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4.3 'KOLAS 공인기관 인정 지위 주장'이란 KOLAS 공인기관임을 나타내기 위한 인정과 관련된 지위에 대한 선언을 말하며, KOLAS 인정과 인정받은 스킴의 표준번호와 관련 있음을 함께 표시한다. 이는 KOLAS에서 허가에 따라 KOLAS 공인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4.4 '스킴 마크'란 적합성평가대상(제품, 프로세스, 사람, 시스템 또는 기관)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성평가기관이 발행하고 보호받는 스킴 마크를 말한다.

4.4.1 '환경정보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스킴 마크'란 인증원이 타당성평가/

검증 활동을 수행하고 발행한 성명서 또는 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적용한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심벌을 말한다. 이러한 스킴 마크는 인증원에서 자체 개발한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의 경우 인증원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의 스킴 마크와 사용 규칙을 적용하며, 외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소유주가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 소유주와 인증원의 계약에 따라 사용한다.

4.5 '환경정보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지위 주장'이란 인증원이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수행하고 발행한 성명서 또는 보고서에 타당성평가/검증의 결과에 적용한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을 나타내기 위한 선언을 말한다.

4.6 '진위확인'이란 인증원이 발행한 타당성평가서, 검증서의 진위여부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일반사항

5.1 인증원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타당성평가/검증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 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최신본을 제공한다.

(1)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1) 공개 가능한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의 정보와 제·개정 사항의 정보

2)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의 수수료

3)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요구사항과 의뢰자의 의무 및 권리

-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의 요구사항(해당하는 경우, 개정사항의 준수)
- 타당성평가/검증 활동 수행을 위한 협조와 준비사항
- 참관인의 참여 수용(심사팀, 인정기구, 프로그램 소유주 등)
- 인정기구, 인증원,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의 인용, 스킴 마크 및 지위주장의 사용 규칙
- 성명서/보고서의 사용 및 관리 규칙

- 의뢰자가 성명서를 인용할 경우, 의뢰자가 사용권한을 받은 범위 내에서의 사용
-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을 위한 자료 및 타당성평가/검증 결과가 인정기구, 외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소유주, 위원회 위원, 심사팀에게 공개되는 사항에 대한 동의
- 불만 및 이의제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협조 사항

(2) 공평성, 기밀유지에 대한 의지표명 및 품질방침

(3) 인증원의 선언서(타당성평가서/검증서/AUP)를 완전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

(4)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타당성평가 및 검증 프로그램(해당하는 경우, 인용, 적용범위, 분류 등을 포함) 목록(KPCQA-EQP-07-F01)과 유효상태

(5) 불만 및 이의제기 프로세스

5.2 인증원은 의뢰자와 타당성평가/검증 활동에 대한 계약 시 5.1항의 요구사항에 대해 준수하도록 계약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타당성평가 및 검증 활동 규정(KPCQA-EQP-PA08)에 따른다.

5.3 인증원의 타당성평가/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인증원에서 규정 또는 인용한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6. 공개정보의 제공 및 관리

6.1 인증원은 제공하고 있는 타당성평가/검증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공개정보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최신본을 유지한다.

6.2 사전에 공개정보로서 규정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의뢰자와의 계약 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정보에 대해 의뢰자,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등이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는 접수하여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후 의뢰자 또는 해당 정보의 소유권이 있는 자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정보 공개한다.

6.2.1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에 대해 의뢰자 또는 해당 정보의 소유권이 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보의 공개 대상으로 제한한다.

(1) 의뢰자 또는 해당 정보의 소유권자의 정보이나 제3자가 불만을 제기한 경우, 불만 제기자에 대한 정보는 의뢰자 또는 해당 정보의 소유권자에게 제공이 제한됨

(2)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정보에 대해 의뢰자 또는 해당 정보의 소유권자에게 정보 공개 통보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의뢰자 또는 해당 정보의 소유권자에게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제한됨

6.4 인증원이 발행한 타당성평가서 및 검증서의 진위확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 이메일로 진위확인신청과 대상 정보를 송부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의 등록 및 유지 등 관리

7.1 인증원은 인정사항과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 오용 및 제재 규칙에 대해 공개하고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모니터링한다.

7.1.1 인증원에서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킴 마크에 대해 「상표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사용이 승인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7.1.2 인증원의 인정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은 인증원이 발행한 결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에 대한 권한은 인증원에게 있다.

7.1.3 인증원에서 채택한 외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소유주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관한 스킴 마크(해당하는 경우, 지위주장 포함)는 인증원과 외부 프로그램 소유주와의 계약에 의해 사용이 승인된 자에 한하여 사용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8.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에 대한 사용 규칙

8.1 인증원의 인정 및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에 대한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에 대한 사용규칙은 각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업무 지침(KPCQA-EQG-FP)에 규정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한다. 인증원은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8.2 타당성평가/검증의 결과로 해당 주장과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의 인용 그리고 스킴 마크를 사용함에 있어 주장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제품인증으로 오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9. 스킴 마크 및 지위 주장의 오용에 대한 조치

9.1 인증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 적절히 조치한다.

(1) 인증원에서 상표권을 보유한 스킴 마크와 이와 관련된 지위 주장

(2) 인증원에서 계약을 통해 허가받은 인정기구 및/또는 외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소유주의 스킴 마크와 이와 관련된 지위 주장

9.1.1 오용에 대한 의심의 정황 또는 제보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9.1.2 경우, 이러한 모니터링 결과는 각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요구사항

따라 인정기구 및/또는 외부 타당성평가/검증 프로그램 소유주에게도 통보한다.

9.2 스킴 마크와 지위 주장에 대해 허가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9.3 스킴 마크와 지위 주장에 대해 허가받은 자가 다음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 특정 프로그램에서 처분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또는 조치를 요구하고 해당 기간동안 성명서, 스킴 마크, 지위 주장 사용과 타당성평가/검증받은 사실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공문으로 통보한다.

(1) 사용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시정조치 요구

(2) 오용으로 인해 주장과 관련된 오인되거나 오인될 가능성(제품인증 등)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

1) 단, 오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과의 취소 및 법적 조치

(3) 인증원의 성명서/보고서 전체 결과를 사용하지 아니함

1) 타당성평가/검증 결과의 오용이 발생한 경우, 결과의 취소 또는 법적 조치

2) 타당성평가/검증 결과의 오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